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법 제도에 관한 연구

두성림*, 권주형**, 최호규***
공주대학교 박사과정*, 단국대학교 강사**, 공주대학교 교수**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Village Enterpris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heongLin Du*, Ju-Hyoung Kwon**, Ho-Gyu Choi***

Kongju National University Doctorate Course Student*, DanKook University Lecturer**,
Kong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최근에 선진국은 저출산율과 고령화, 급격한 인구 이동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민 지방자치 참여를 위한 지역 단위별 공동체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법 제도를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의 분석결과와 적용가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마을기업의 개념과 등장배경 그리고 유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제도적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미국 시애틀시와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등 마을기업 법 제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 결과에 따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고 세분화해야 한다. 이는 각 지역별로 적합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출장소를 설치하고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세분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즉,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계적인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단계적 사업 시행을 통하여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대학 및 특성화고등학교가 함께 사회혁신과 같은 지역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제어 : 미국, 일본, 마을기업, 법 제도, 공동체 조직

Abstract Recently,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suffering from a weakening sense of community due to low birthrate, aging population, rapid population movement,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s a result, participation in local autonomy of resident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is forming community organizations at the region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legal system of American and Japanese village enterprises. We would also like to analyze the legal system of village enterpris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examine the examples of the legal system of village enterpris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pecifically, the first is to consider the concept, background, and type of village enterprise based on prior research. Second, review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American and Japanese village enterprises. Third, I would like to analyze the cases of legal systems for village businesses such as Seattle City in the U.S. and Setaga Baseball in Tokyo, Japan. Fourth, suggest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First, the village 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set up and subdivided into dedicat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is should establish a segment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ystem to support village development by establishing branch offices to support administrative services tailored to each region. Second, the village-building project should secure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In other words, there is an excuse to seek ways to continuously secure independent funds without relying on the administration financially for the village development project. Third, village-building should be carried out in phases.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activities of residents and promote continuous projects through phased project implementation. Fourth, a foundation must be laid for the universities and specialized high schools in the community to operate programs for regional innovation, such as social innovation.

Key Words : The United States, Japan, Village Enterprises, Legal Systems, Community Organization

Received 19 June 2020, Revised 09 July 2020

Accepted 16 July 2020

Corresponding Author: Ho-Gyu Choi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hogyu@kongju.ac.kr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에 선진국은 저출산율과 고령화, 급격한 인구 이동,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민 지방자치 참여를 통하여 지역 단위별로 공동체조직을 형성하고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며 또 그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정은주, 2001). 예를 들면 미국의 근린협의회와 일본의 지역주민협의회 및 마을 만들기 운동은 바로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자치를 위해 참여하는 자치조직이라 볼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행정은 주민과 더욱 가깝고 두터운 신뢰관계의 토대위에서 가능한 한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주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민으로부터 통제를 받으면서 수행될 것이 요구된다(윤한천, 2001). 이렇게 볼 때 주민참여는 현대행정의 시대적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적 장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의 성공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유영찬, 2004).

또한, 마을 만들기가 마을단위의 주거환경을 지역 특성에 부합하게 주민 스스로 개선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마을 만들기 사업 중 경제적 비즈니스를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마을 만들기과 마을기업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문중화, 2012).

한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각 지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고려되었고 이후, 마을기업 정책들의 대부분은 호의적인 인식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확립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져 왔다(김도완, 2018).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중에 마을 만들기 사업과 비슷한 사업들이 많으나 각 관련부서에서 사업추진, 다시 말하자면 유사사업의 통합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조례제정 및 부서 신설, 필요예산의 통합 및 확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원방안 마련 등 지방자치단체의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 정비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문중화,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법 제

도를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의 분석결과에 대한 적용가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마을기업의 개념과 등장배경 그리고 유형에 대한 고찰한다. 둘째,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제도적 특성에 대해 검토한다. 셋째, 미국 시애틀시와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등 마을기업이 법 제도 사례에 대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2. 마을기업과 마을 만들기

2.1 마을 만들기

최근 마을 만들기의 움직임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활력 있는 마을 만들기’,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정책 등을 주장하고, 주민들과 시민단체들도 자주적으로 ‘마을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이지혜, 2009). 여기서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에서는 쉽게 이해하자면 ‘마을’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 ‘마을’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는 ‘만든다’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

마을 만들기라는 말은 일본말로는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라고 하는데, 일본어에서 ‘마치’라는 말은 길(街)의 표현이고, 하드웨어가 중심이 되는 뉘앙스가 담겨있다. ‘정(町)’이라고 하면 마을이라는 의미도 있고, 행정단위로서 ‘읍’으로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정즈쿠리(町づくり)’는 행정중심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즈쿠리(街づくり)’, ‘정즈쿠리(町づくり)’라는 말을 모두 사용하였는데 최근에는 한자를 쓰지 않고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라고만 쓰고 있으며, 전문가와 시민운동 및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이명규, 2007).

따라서 마을 만들기 운동이 추구하는 가치도 결국 지역사회 재구조화 및 이웃과의 관계 회복과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성과 만족감에 있다. 더욱이, 마을 만들기는 주거환경의 토목, 건축적 정비 등 마을환경에 대한 물리적 개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동 마을의 조직, 재정, 자치조직, 시민의식 등의 소프트웨어적 의미도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즉, 마을 만들기는 하드웨어 시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차원의 향토애와 이웃사랑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웃과의 관계마저 단절된 현실을 감안할 때 마을을 바꾼다는 말은 마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이웃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체 주체를 회복한다는 목표에 분명히 부합한다.

일본에서 ‘마을 만들기’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을 지탱하며 편리하고, 보다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의 장을 만들어가는 방법과 과정’이라고 규정하였다(田村愛良, 1987).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학자에 따라 ‘지역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흐름을 일컬어 마을 만들기라 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정비 및 이를 가능케 하는 각종 제도와 틀’이라 정의하고 있다(문승국, 1999).

또한 마을창조라는 책에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으며, 첫째, 마을 만들기란 용어는 지역을 시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인의식을 부여한다(김해숙, 2017).

둘째, 마을이란 것은 사물이나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 면에서 다양하지만, 더 크고 더 전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사물과 시설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방법, 어떻게 마을을 활기차게 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드웨어에는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마을 만들기는 도시나 지역이 주체성을 가지고 역사적 유산, 전통문화 또는 개성적인 풍경과 운치를 소중히 여기도록 마을을 자랑하고 사랑할 만한 개성과 문화를 가진 마을로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김해숙, 2017).

넷째,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인간 존중의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즉 안전과 노인과 어린이의 안심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질적 가치를 창출한다.

다섯째, 이질적이고 각각 가치관이나 자유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 차이점을 극복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와 조직을 만든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여섯째, 마을을 만드는 핵심이 되는 것은 마을을 사랑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재’를 발견하는 것이다(김해숙,

2017). 이들은 시민일 수도 있고 공무원일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을 발견하고 키워야 되며, 또한 전 주민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각하며, 지역에 대한 책임·참여·협동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시민이 마을 만들기의 기초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마을 만들기 뿐만 아니라 인재를 만든다고 할 수도 있다.

일곱째, 마을 만들기는 이념에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실천하는 의미를 포함한다. 적극적인 행동, 즉 시민의 실천적 행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안동규 외, 2006). 이런 관점에서 마을 만들기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공간, 장소, 시설 등을 만들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주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다.

2.2 마을 만들기 등장배경

‘마을 만들기’는 최근 ‘지속가능한 도시’ 또는 ‘생태도시’, ‘녹색도시’ 및 ‘환경자치체’등과 같은 용어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용어는 주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환경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한다.

1970년대에는 소득증대가 주요 정책에 따라 환경보다 산업발전 또는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차츰 삶의 환경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보다 구체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즉, 1991년의 ‘낙동강 페놀사건’, ‘쓰레기 소각장에서 방출되는 다이옥신’, ‘도시의 콘크리트화에 따른 녹지의 감소’등의 쟁점과 같은 현상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또는 정주환경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이행렬, 2001).

이러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식과 행동이 환경의 중요성과 주거의 쾌적성을 추구하며, 둘째, 지방자치와 행정의 변화는 적정수준의 시민사회로 전환, 셋째, 시민운동 단체나 전문가들이 정부에 대한 대항적 성격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는 곳에 있다(김선직, 2009).

따라서 이러한 배경 하에 ‘마을 만들기’와 같은 주민 중심의 공동체적 사회구조로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요구하는 주민참여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마을 만

들기 운동에서도 주민참여 방법과 절차는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 성숙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정부 주도의 지역 개발 사업에서는 아직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의 마을 만들기는 지금까지의 개발지상주의에 의한 도시계획, 지역개발계획과 생각이 다른 지역활동가, 전문가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이다(문중화, 2012). 둘째, 정부는 같은 지역개발정책이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조직화되고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발전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농촌의 경우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주민참여의 방법들이 개발되어 전개되어 정부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이를 추종하고 있는 실정이다(임경수, 2007).

넷째, 마을 만들기 운동을 따라한 정부 사업이 오히려 지역주민의 참여를 막아 주민들의 창의성을 훼손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3 마을 만들기 유형

마을 만들기의 유형은 크게 주민주도형, 시민단체 주도형, 행정기관 주도형, 전문가 주도형으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주민 주도형은 주민 스스로가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로, 이 중에는 행정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주민 스스로 이루어낸 경우와 주민이 먼저 시작하고 나서 행정이 지원한 경우가 있다.

둘째, 시민단체 주도형은 시민단체가 주도해 주민들과 함께 마을 만들기를 벌이는 형태로 시민단체와 주민이 함께 생활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와 주민과 시민단체가 생활공간 안에서 함께 자율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녹색아파트 만들기, 녹색가게 등)를 들 수 있다(이상민, 2008).

셋째, 행정기관 주도형은 행정이 주도하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사례로 행정 측면이 먼저 주민 참여형 사업을 시작하거나 주민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형식 또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이다(문중화, 2012).

넷째, 전문가 주도형은 전문가가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식이다(이용연, 2004).

3. 미국과 일본의 마을기업 법 제도

3.1 일본의 마을기업의 제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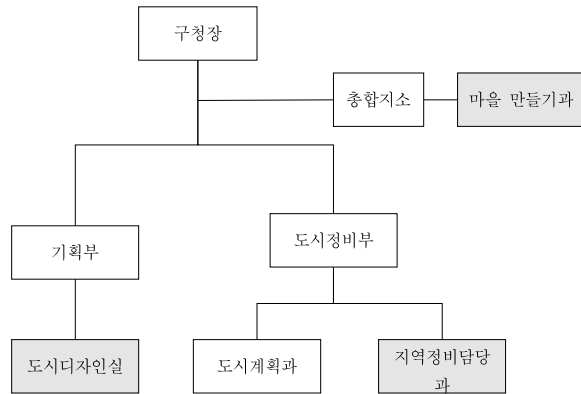
주민 운동의 계기는 일본 전후의 경제 성장을 들 수 있다. 급격한 산업화로 지역의 생활환경이 악화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여러 사업이나 계획에 저항하기 위한 주민운동으로 태동했다. 시기별로는 1950년대 지역개발시대 이후 1960년대 고도경제성장기 동안 공해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시민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가 활발해졌다. 이 시기의 경제성장은 급속한 도시화와 환경파괴 및 공해문제 등에 따른 문제를 야기했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촉발시켰다. 특히 대도시권 주민운동은 생활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주민, 전문가 및 지방정부가 함께 마을개조와 공공시책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추세는 1970년대 경제발전의 저성장기로 옮겨가 시민 자치에 따른 지방자치를 요구하는 시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계획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도해보았다. 고베시의 조례 제정, 커뮤니티 센터 등의 설립, 각종 마을 건립 위원회와 협의회를 통한 주민 참여의 조직화는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1980년대 들어 이러한 조직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때문에, 특정 대상으로서 도쿄도(東京都) 안의 세타가야구(世田谷區)에 “마치즈쿠리 센터”를 설치해, 마치즈쿠리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 경제 및 사회적 상황의 장기 침체 및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또한 일본의 핵심사례를 보면 도쿄도는 지방자치법(1975년)의 개정으로 구의 자치권이 확대되면서 독자적인 마을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그 중 세타가야구는 도쿄도내의 서쪽에 위치해, 고베시(神戸市)에 이어 선도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도입·운영했다.

세타가야구는 1975년 민선에 선출된 오바구청장이 주민참여를 통해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반영해 거의 모든 행정에 주민참여를 도입하면서, 이때부터 세타가야구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했다(방경숙, 2015). 이후 세타가야구는 고베시에 1982년에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

정하고 지원행정조직으로 구청 내에 ‘도시디자인실’과 ‘마을 만들기과’ 등을 설치하여 시스템을 정비했다. 1992년에는 일본 최초로 ‘마을 만들기 센터’를 설립해, ‘마을 만들기 펀드’조성을 통한 사업의 진행 및 확대를 완수하였다. 이러한 세타가야구의 사례는 고베시와 함께 1980년대에는 조례제정을, 1990년대에는 ‘마을 만들기 센터’설립을 통해서 일본의 선진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림 1]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조직도

출처: 국토연구원(2007), 일본의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연수보고서, p.76.

또한 세타가야구와 같이 선도적으로 도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2005년에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해 지속적으로 마을 만들기센터를 설치하고 의욕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는 네리마구(練馬區)도 있다. 네리마구는 일본에서도 흔하지 않게 마을 만들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체의 하나로, 도쿄도내에서 북서쪽의 가장 끝에 위치에 있다.

네리마구는 1998년에 시작하여 2003년까지 약 4-5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여 네리마구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을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져 마을 만들기 조례를 검토하게 되었다. 그 후 2005년에 제정된 마을 만들기 조례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원래 존재했던 다른 조례나 도시계획 관련 조문을 ‘네리마 마을 만들기 조례’ 안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구민에게 마을 만들기에 대한 법적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지자 ‘마을 만들기 센터’를 설립했다.

세타가야구의 조례에서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주민

의 참여와 책임 등을 기본이념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행정은 마을 만들기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방침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문종화, 2012). 그리고 네리마구 마을 만들기 조례는 세타가야구와 달리 마을 만들기 조례에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조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 종합적인 마을 만들기 조례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동경도 내에서도 최초로 제정된 사례로서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조례를 통해 개발사업 실시가 가능해졌으며,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3.2 미국의 마을기업의 제도적 특성

미국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여러 접근방법 및 이론들이 도시계획 속에 포함되어있다. 특히 시민참여와 관련해 1960년대에 ‘참여주의계획’이라는 새로운 도시계획이론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몇몇 도시들은 단순히 근린계획이나 의안발의권과 같은 제한적 참여를 넘어 지방법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최종환, 2018).

시에틀시는 국내에서 도시 건설의 우수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다. 1972년 당시 시장이었던 웨스 울먼(Wes Uhlman)이 “주민과 가까운 시청,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의욕적으로 시행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주민들을 위한 마을 단위의 행정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내 여러 도시 중 가장 모범적인 마을 만들기 지원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를 전담하고 지원하는 행정기구를 갖추고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단위 도시계획(마을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직접 육성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다. 주민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할 때 언제라도 그 주민조직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지원제도도 갖추고 있다(정석, 1999).

시에틀시는 마을 만들기를 담당하는 부서가 독립적이다. 마을 만들기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마을과’가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이 마을과라는 부서 안에 ‘마을 서비스 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가장

가까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건전한 커뮤니티 건설과 다양한 소득계층의 주민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최중환, 2018).

또한 마을 단위의 도시계획 수립과 같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1995년에 ‘마을계획실’을 설치하여 4년간 운영했다. 이후 마을계획활동으로 바뀌면서 마을 단위의 도시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시애틀시의 마을 만들기 지원 행정조직인 마을과와 마을서비스센터, 주택과, 마을계획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마을과(Department Of Neighborhoods)’는 시애틀 주민이 강한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그들의 커뮤니티 내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 및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효선, 2012). 마을과는 시내 180곳이 넘는 지역들과 그들의 커뮤니티 및 지역정부가 더욱 밀접한 관계를 이룩하며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최중환, 2018).

이제 ‘마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로는 역사 보존, 마을지원기금 운영, 마을계획 활동, 마을서비스센터 운영 및 마을계획 시행에 관한 다양한 업무 이외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쾌적한 환경 만들기를 지원하는 등 많은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 밖에 주택가에 놀이터를 조성하며, 나무를 심고 채소를 가꾸는 것은 물론 어린 시절부터 마을 만들기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② ‘마을서비스센터(Neighborhood Service Centers)’는 ‘작은 시청(Little city halls)’ 운동에 따라 1972년에 처음으로 6개 지역에 센터가 설치된 이후 현재는 13개소의 센터가 도시전역에 확대 설치되어 있다(강기운, 2005).

이러한 마을 서비스 센터는 시의 13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은 시청’에서 ‘주민과 가까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청을 작게 나누려는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각 센터별로 시 서비스 및 주민 서비스 기관, 프로그램 및 지역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마을서비스센터 13곳 중 7곳의 고객센터에서는 마을 만들기 센터 업무 이외에도 여권 신청, 시공과금 납부, 애완동물 면허증 신청 및 버스패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

비스 및 안내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업무 등 매년 225,000명의 거주자를 지원하고 있다(최기봉, 2010).

③ ‘주택과(Department Of Housing)’는 시애틀의 무주택소유자, 주택 수리비가 없어 집수리가 어려운 사람, 입주 가능한 주택을 찾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였다(최중환, 2018). 주택과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 중에 “Home Wise: Repairing Your Home”이라는 프로그램은 주택 구입자, 주택 소유자, 세입자 모두를 위해 무료로 단열 공사를 지원해 준다. 또 거주자의 수입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주택 수리비를 대출해 주고 있다.

1995년부터 시애틀은 마을 단위의 도시 계획을 시작했다. 마을계획 수립작업은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계획 수립과정은 주민들이 주도하고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는 마을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들이 원하는 마을로 계획하기 위해 모인 주민 조직과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정성식, 2006). 현재 마을계획을 지원하는 전문가들과 마을계획자문위원회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계획수립 과정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마을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해 주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의 문제와 비전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고, 각각의 계획들은 마을의 독자적인 역사나 특성을 반영해서 마련된다(안병훈, 2009).

주민주도로 마을계획을 세우고, 마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시설이나 장소 만들기를 하는 등의 주민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로부터의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이다(강기운, 2005). 시애틀시는 이러한 마을 만들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1988년부터 ‘마을지원기금(NMF, Neighbourhood Matching Fun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 지역의 고유성과 이웃 간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마을 만들기의 핵심이며, 이러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운영되는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지원을 공급하는 것이 마을지원기금의 핵심이다. 그리고 NMF 프로그램 중에는 4종류의 지원기금이 존재한다.

첫째는 ‘주민활동지원기금(Small Sparks Fund)’은 지역 커뮤니티의 회원 활동 보조금으로 최고 1,000달러 정도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주민들의 유대감을 높이고 회

원 수를 늘리거나 여러 사람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쓰인다. 사업지원 신청은 1년 내내 접수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둘째 ‘소규모 프로젝트 기금(Small and Simple Projects Fund)’은 시설 등의 하드웨어적 설치를 위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최고 20,000달러 정도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지역 내 작은 공원의 정원 벽화 등과 같은 시설물 설치를 위해 쓰이며, 지원 신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받는다.

셋째 ‘대규모 프로젝트 기금(Large Projects Fund)’은 프로그램 및 시설 설치를 포함하여 지역주민 위해 최고 100,000달러 정도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노인복지센터, 방과후 교육센터, 운동장 리모델링 및 각종 커뮤니티 관련 교육을 위해 쓰인다. 사업지원신청은 A letter of intent(LOI)라는 제안서를 2월에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가 통과된 지원자는 2개월 후 제안서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녹지기금(Tree Fund)’은 도시의 숲, 공원과 정원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제공한다. 1가구에 최대 1개의 나무를 포함해 1개 커뮤니티 당 약 40그루의 나무를 제공한다. 나무지원 신청은 매년 8월 경에 최저 5가구 이상 지역의 대표가 신청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6주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다(이용연, 2004).

4. 미국과 일본의 마을기업 법 제도 사례

4.1 미국 시애틀시

미국은 1970년대 대형 매장의 교외 출범과 함께 교외 개발이 더욱 확대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도심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던 시기에 캘리포니아주의 페탈루마(Petaluma)시에서 처음으로 교외 개발을 억제하는 ‘성장 관리 정책’을 시행했다.

「주택커뮤니티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을 연방정부는 1974년 제정하고, 1980년대는 1970년대 대형 재개발에 의한 오피스텔의 증가, 도로 등 도시인프라 부하증대, 경관환경의 악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교외개발 규제정책 실시와 함께 도시의 성장관리정책(Smart Growth)이 각 도시에서 보편화되고 균형있는 성장을 지향하는 재개발이 시작된 시기이다(이광국 외, 2013).

시애틀(Seattle)은 미국 태평양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주변경관이 뛰어나고 미국에서 15번째로 큰 규모의 도시로서 시애틀시에만 약 6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 보잉사를 비롯한 국방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1950~1960년대에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도시재생사업단, 2012).

미국의 마을 만들기 주요사례는 시애틀(Seattle)시, 샌디에이고(San Diego)시, 벌링턴(Burlington)시를 들 수 있으나, 이 중에 시애틀시는 1987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을계획과 지원에 관한 제안’이 승인되면서 1988년 마을사무소(Neighborhoods Office)를 개소하여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 센터, 2016).

미국 시애틀시는 국내에서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1972년 당시 시장이었던 웨스 울만(Wes Ullman)이 마을 만들기를 펼치던 이래, 수차례에 걸쳐 행정조직을 재편하고, 주민을 위해 마을단위의 행정조직을 편성하였으며, 미국 내 여러 도시들 가운데서도 가장 모범적인 마을 만들기 지원행정을 펼치고 있다(정석, 1999).

또한 주민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라도 그 주민조직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지원 제도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정석, 1999).

지원 행정조직에 있어서 시애틀시 마을 만들기 지원 행정조직은 마을과 마을서비스센터, 주택과 등으로 나뉘는데 마을은 시애틀 주민이 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그들의 커뮤니티 내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자원이나 기회를 제공하여 시내 180개가 넘는 지역과 그들의 커뮤니티나 지역정부가 보다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역사보존(Historic Preservation)과 마을지원기금(Neighborhood Matching Fund) 운영 및 마을계획활동(Neighborhood Planning Outreach)이다(황만규, 2018).

그리고 마을서비스센터 운영 및 마을계획 집행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다루고 있다.

둘째, 마을서비스센터는 1972년 설치된 이래 13개 센터가 시의 13개 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시청’이라는 명목 아래 각 센터별로 마을 만들기 업무 외에 여권발급, 공공요금, 버스패스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핵심 행정조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주택과(Department Of Housing)는 시애틀의 무주택 소유자, 수리비가 없어 집 수리가 어려운 사람, 입주 가능한 주택을 원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 중 “Home Wise: Repairing Your Home”이라는 프로그램은 주택 구입자, 주택 소유자, 세입자 모두에게 무료로 단열공사를 지원하며 주택자의 수입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주택 수리비를 빌려준다(황만구, 2018).

또한 시애틀시의 마을 만들기 지원 예산 및 프로그램은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Neighborhood Planning Outreach)을 1995년부터 마을 단위의 도시계획으로 개시하여 계획 책정과정은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는 마을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위원회가 원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조직 또는 주민들로 구성했다(황만구, 2018).

따라서 마을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의 문제와 마을의 비전을 알게 되고 그에 따른 마을의 전통 역사 및 본래의 특성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지원기금(Neighborhood Matching Fund: NFM)은 주민 주도로 마을 계획을 세우고 마을 현안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시설과 장소를 조성하는 등의 주민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데, 시애틀시는 이러한 마을 만들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1988년부터 ‘마을 지원 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김선기·이소영, 200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을지원기금 프로그램 중에는 4종류의 지원기금이 있어 1) 주민활동지원기금(Small Sparks Fund), 2) 소규모 프로젝트 기금(Small and simple Projects Fund), 3) 대규모 프로젝트 기금(Large Projects Fund), 4) 녹색기금(Tree Fund)으로 구성되어 있다.

4.2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일본은 고도성장을 이룬 1960년대 중반 소득증가가 반드시 삶의 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형성되자, 도시의 물리적 기능 개선위주의 기존도시계획체제를 마을 만들기로 보완하였으며, 1980년대 들어서면서 추진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치즈쿠리(課)’ 등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1990년대에는 ‘마치즈쿠리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마치즈쿠리 펀드(기금)’를 도입하고 1998년 ‘마치즈쿠리 3법’156)을 시행하여 체계적인 법적 틀까지 갖추게 되었다(이창호, 2012).

4.2.1 지원 법

2001년 도시재생본부 발족 및 2002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Urban regeneration Act on special measures)」 제정을 통하여 도시재생을 국가의 주요시책으로 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이광국·임정민, 2013).

일본은 2005년 3월 「국토총합개발법」을 개정하고 같은 해 12월 법률 제목이 「국토형성계획법」으로 변경되어 시행되면서, 중앙정부가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본방향을 「국토형성계획법」을 입법시켜 그것에 근거하여 각의에서 결정되면 전국총합개발계획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한수, 2009).

제1회 전국 종합 개발 계획(1962년)은 고도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제2회 계획(1969년)은 도농 격차 해소에 주력하면서, 제3회 계획(1977년)은 개발 중심의 정책에서 환경 정비 쪽에 중점을 두어 정주권 중심의 버팀목 정책으로 전환했다. 제4회 계획(1987년)은 제3차 전국 종합 개발 계획에서 제기된 「정주권 계획」에 「교류」라는 개념이 추가되어, 이 개념으로부터 지역이 중심이 되는 도시 만들기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일본에서 마을 만들기(まちづくり)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하나의 운동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고, 그 범위는 매우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교육현장인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각 교육기관에 있어서도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 활발하게 교육 및 실천을 하면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를 3가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한수, 2009).

첫째, 주민이 참여한 도시계획, 둘째 구도심 만들기라는 뜻으로 주로 마을 만들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상업지와 도시계획의 복합적인 중심시가지에서의 재개발 사업, 셋째 마을의 경제적 성장 등의 활성화라는 의미에서 마을 만들기이며, 주로 대도시의 인구집중화에 의해 과소화가 일어나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그 매력을 높임으로써 인구증가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의미로서 활용된다.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이하 “세타가야구”라 한다)의 마을 만들기는 지역 내 여러 주거환경문제 개선의 필요성과 더불어 1975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도시계획권이 ‘도’에서 ‘구’로 대폭적으로 위임되고 주민에게 친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구’의 독자적인 마을 만들기 전개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구청장 직선제에 의해 당선된 오오바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구정구현을 구정운영의 기본방침으로 삼고, 마을 만들기를 통한 지역사회 개발운동을 추진하였다(목정훈·박종현, 2008).

세타가야구는 주민 참가를 이용하여 구정의 방향성을 정한 후 확고한 의지 표명과 함께 마을 만들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1982년에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구청 조직 내에 마을 만들기 조직을 설치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였다.

마을 만들기 운동의 효시는 세타가야구인데, 이곳에서는 5개의 선도프로젝트를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선정하고 인프라 조직으로 마을 만들기 센터(Setagaya Community Design Center), 마을 만들기 조례(Setagaya Community -Making Regulation), 마을 만들기 펀드(Setagaya Community Fund)등을 설치하였다(정재희, 2012).

4.2.2 지원행정조직

세타가야구의 지역은 개별특성을 갖고 있으며, 지역의 요구도 다르고, 구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세타가야구는 구청, 종합지소, 출장소, 마을 만들기 센터 등을 두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주민중심의 종합적인 관리행정체제를 마련하였다(문종화, 2012).

세타가야구 본청은 구의 정책형성과 같은 통합적인 구 전체에 관한 일이나 각 종합출장소 간의 조정 등을

실시하는데, 종합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세타가야(世田谷), 기타자와(北澤), 타마카와(玉川), 카누타(砧), 카리야마(鳥山) 등 5개의 지역은 27개 지구로 다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정석 외, 2010).

또한 2009년부터 출장소의 명칭이 출장소와 마을 만들기 출장소 두 기관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명칭에 대한 의견이 많아 새로운 명칭안을 가지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 만들기 센터’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마을 만들기 센터에 있어서 종합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5개 지역에는 지역을 세분화하여 총 20개소의 마을 만들기 센터를 주민·행정·기업의 파트너십에 조직된 지구로 1992년 출연금 4억 엔을 출자하여 설립한 (재)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을 만들기에 파견한 직원과 지역 내 단체들의 협력으로 운영하고 있다(양재섭, 2012).

세타가야구 마을 만들기 센터는 그동안 일본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조직으로서 생성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어 왔다(정석 외, 2010).

첫째는 펀드와의 제휴를 통해 주민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익신탁 세타가야 만들기 펀드’와 연계하여 주민이 실시하는 마을 만들기 활동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과 코디네이터적인 역할 등을 지원하였다.

둘째는 마을 만들기 활동 그룹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의해 그 관계를 살린 조사연구나 심포지엄, 강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주민과 구 사이에 중립적 역할을 한다. 구청과는 별도로 외부단체로서 구청 담당부서와의 연락, 조정이 용이하고 주민과 구청의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서로를 중재하기 쉬운 입장에 있다.

네 번째로,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으로서 주민 참가형 마을 만들기 경험이 축적된 점이다. 특히, 지역 환경에 대한 학습이나 여러가지 기법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섯 번째로, 마을 만들기에 관한 정보를 집적화시킨 것으로,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을 만들기의 선진사례로 주목 받고 있기 때문에 각 방면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고 그 결과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활동이나 전문가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었다.

여섯 번째는 센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 건

설 활동에 대한 지원이다. 센터에서는, 사람과의 네트워크나 시민과 함께 생각하는 자세, 그리고 정보력을 중요시하며,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마을 만들기 센터’를 처음 설치한 지역이 세타가야구로, ‘마을 만들기 센터’는 주민과 기업 그리고 행정기관의 중간에 위치한 기구로, 주민의 마을 만들기 추진에 지원하는 중간조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세타가야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크게 7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로 자연환경이나 역사적, 문화적 환경의 보전과 창출을 위한 운동을 추진한다(정석 외, 2010). 둘째는, 주민이나 사업자 또는 행정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으로서 강좌를 개설하고 마을 만들기 도서를 발간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네 번째는 펀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펀드를 만들기하여 운영하는 전반에 관한 사업이다. 다섯 번째,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여섯 번째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유지·정비하는 사업으로, 지하 역사나 공공 시설 관련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 번째는 마을 만들기과 관련한 주차장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사업이 있다. 마을 만들기 활동을 위한 예산은 세타가야구 구청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발간하는 도서의 판매수익 등의 구 자체수익금으로 확보한다(양재섭, 2012).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법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마을기업 법 제도를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의 마을기업 법 제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시애틀시와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등 마을기업 법 제도 사례에 대한 분석한 바 우선 미국 시애틀시의 사례에 따라 지자체가 마을 만들기 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갖고 있으며, 주민이 마을 만들기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 만들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주도하여 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시애틀시의 마을지원기금(NMF)의 마을 만들기지원기금은 지역 주민이 신청할 경우 자격 심사를 통하여 지원하며, 이에 대한 기금은 매년 일정 규모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마을 만들기 지원 업무’만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도시계획의 출발점이 마을 주민으로 시작되는 상향식이라는 점이다.

또한 세타가야구의 사례는 일본에서 고베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점이다. 조례를 살펴보면, 마을 만들기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책임 등을 기본이념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마을 만들기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타가야구의 마을 만들기 예산은 세타가야구청의 보조금과 마을 만들기센터가 발행하는 도서판매수익 등의 자주수익금, 그리고 자치구 수탁사업을 통해 확보하였다. 이외, 「공익 신탁 세타가야 마을 만들기 펀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펀드 운용으로 센터는 행정의 관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위탁자는 지원 대상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전담행정조직의 설치와 세분화해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에서는 행정기관의 안에 마을 만들기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다는 점이다. 즉, 각 지역에 알맞은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세분화된 행정조직을 통하여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마을 만들기의 사례를 보면 예산적인 면에서 행정 재정적 지원에 의존할 경우 센터가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고 행정기관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그 때문에, 무엇보다도 센터에서 중요한 점은 자주적 재원 확보를 통하여 재정적 독립을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단계적인 사업 실행해야 한다. 단계적인 사업시행은 주민의 활동 지원에 있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경험한 지역이나 또 다른 마을 만들기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초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면 이후 주민 스스로가 단계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도심공동화 현상이나 수도권집중현상(한국일보, 2020.6.30.일자), 농어촌의 초고령화와 같은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이나 지방도시 또는 부락단위의 농어촌의 경우라도 행정조직의 ‘마을 만들기’ 또는 ‘도심재생프로젝트’,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의 형성이나 발전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조화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지자체에도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행정지원조직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행정조직이 주도하고, 사회혁신조직이 따라가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연(2012), 이상민(2008)의 연구에서처럼 전문가조직이나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형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 만들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마인드가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를 위한 지적 기반 및 태도의 형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나 실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등이 연계되어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자발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주도하는 형태의 한국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비근한 사례로 ‘공주대학교의 KNU기업경영연구소’가 주관하고 있는 사회혁신기업 세비코(SEVICO) 포럼 등을 들 수 있다. 세비코는 사회적경제(SE, Social Enterprise), 마을기업(VI, Village Company), 협동조합(CO, Cooperative)의 약자로 매년 포럼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혁신기업과 함께 마을 만들기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References

- [1] 강기윤(2005),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창원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국토연구원(2007), 일본의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연구 수보고서, 국토연구원.
- [3] 김도완(2018), 마을기업이 마을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광진구, 성동구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선기·이소영(2007),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 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5] 김선직(2009), 마을 만들기의 전략적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 도시정보공학과.
- [6] 김한수(2009), 『일본 마을 만들기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김해숙(2017), 어음책마을 조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스토리텔링학과.
- [8] 도시재생사업단(2012),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이야기, 한울, 50-53.
- [9] 목정훈·박종현(2008), 마을 만들기 운영사례 비교연구-광주광역시 북구와 동경도 세타가야구를 중심으로-, 한국도시계획학회지, 9(4):19-38.
- [10] 문종화(2012),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방경숙(2015), 지역사회복지 관점에서 본 부산의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 센터(2016), 서울시 마을공동체 열린마당(1), 자료실, 7.
- [13] 안동규 외(2006), 마을 창조, 서울: 소화.
- [14] 안병훈(2009), 효율적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양재섭(2012), 서울의 마을단위계획 운영 실태와 자치구 역할 개선방향 연구, 서울연구원.
- [16] 유영찬(2004), 지방분권화시대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 [17] 윤한천(2001),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도시및지역개발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 [18] 이광국·임정민(2013), 선진국의 도시재생 흐름 고찰과 시사점-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48(6), 521-547.
- [19] 이명규(2007), 한국의 마을 만들기 조례의 현황과 과제, 희망제작소 부설 조례연구소.
- [20] 이상민(2008), 住民參與形 마을 만들기事業이 都市計劃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研究, 광주대학교.

- [21] 이용연(2004),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활성화 방안 :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 YMCA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 [22] 이지혜(2009),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도에 관한 영향구조 분석 : 광주광역시 북구지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 [23] 이창호(2012), 이슈와 논점: 마을공동체 만들기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제436호.
- [24] 이행렬(2001), 새로운 세기의 마을 만들기 방향과 전략.
- [25] 이효선(2012), 공공디자인과 뉴거버넌스의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 '마을 만들기 교육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임경수(2007), 우리나라 마을 만들기 운동의 현황과 과제, 서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7] 정석(1999), 마을 만들기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 서울연구원.
- [28] 정석·최기봉(2010), 서울시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 연구, 서울특별시.
- [29] 정성식(2006),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충북 영동·옥천·보은군을 중심으로, 영동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30] 정은주(2001), 지방자치에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일반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31] 정재희(2012),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본 마을 만들기: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대한건축학회지, 56(6), 57-65.
- [32] 최중환(2018),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 광운대학교: 건설법무학과.
- [33] 황만구(2018), 마을공동체 사업 기본법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두 성 립(Du, Cheng-Lin)



- 공주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인사 및 조직, 노사관계, 조직진단, 조직문화, 리더십 등
- E-Mail : hduchenglin@kongju.ac.kr

권 주 형(Kwon, Ju Hyoung)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박사
- 현재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 관심분야 : 마케팅, 유통, 경영전략, 조직문화
- E-Mail : ibmem@naver.com

최 호 규(Choi, Ho Gyu)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박사
- 현재 : 공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마케팅, 광고, 마케팅리서치 등
- E-Mail: hogyu@kongju.ac.kr